

지속가능경영규정 일부개정(안)

□ 개정이유

- 감사실-669(' 13.2.21)호와 관련하여 반부패· 청렴정책에 대한 중요사항 결정 등 청렴정책 실행역량 강화를 위해 기존 윤리경영위원회를 『청렴실천특별위원회』로 확대 개편 및 윤리실천사무국을 청렴실천사무국으로 명칭변경

□ 주요내용

- 「윤리경영위원회」를 「청렴실천특별위원회」로 수정 등
 - 제8조 제1항(변경) : (청렴실천특별위원회의 설치) 청렴경영 및 윤리경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청렴실천특별위원회(이하 이장에서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 - 제8조 제2항(변경) : 위원회는 내부위원과 외부자문위원을 포함하여 24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그 위원은 아래 각 호와 같다.
 1. 내부위원 : 부사장, 본부장, 윤리경영담당부서장, 감사담당부서장, 그 밖에 위원장이 정하는 윤리경영과 청렴시책 관련업무 본사 담당부서장 등 20명 이하

2. 외부자문위원 : 사장이 위촉하는 사람 또는 『청렴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』 제2조 제1호의 청렴옴부즈만으로서 4명 이하

○ 윤리실천사무국을 청렴실천사무국으로 명칭변경

- 제10조(청렴실천사무국과 반부패실무추진반)(변경)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청렴실천사무국(이하 이 장에서는 “사무국”이라 한다)과 반부패실무추진반(이하 이 장에서는 “추진반”이라 한다)을 둔다.

지속가능경영규정 일부개정(안)

지속가능경영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8조(청렴실천특별위원회의 설치) ① 청렴경영 및 윤리경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청렴실천특별위원회(이하 이 장에서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내부위원과 외부자문위원을 포함하여 24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그 위원은 아래 각 호와 같다.

1. 내부위원 : 부사장, 본부장, 윤리경영담당부서장, 감사담당부서장, 그 밖에 위원장이 정하는 윤리경영과 청렴시책 관련업무 본사 담당부서장 등 20명 이하
2. 외부자문위원 : 사장이 위촉하는 사람 또는 『청렴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』 제2조 제1호의 청렴옴부즈만으로서 4명 이하

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0조(청렴실천사무국과 반부패실무추진반)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청렴실천사무국(이하 이 장에서는 “사무국”이라 한다)과 반부패실무추진반(이하 이 장에서는 “추진반”이라 한다)을 둔다.

부칙

이 규정은 2013년 월 일 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(안)
지속가능경영규정	지속가능경영규정
제8조(윤리경영위원회의 설치)	제8조(<u>청렴실천특별위원회</u> 의 설치)
① 윤리경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윤리경영위원회(이하 이 장에서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② 위원회는 내부위원과 외부자문위원을 포함하여 14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그 위원은 아래 각 호와 같다. 1. 내부위원 : 부사장, 윤리경영담당부서장, 감사담당부서장, 기획조정담당부서장, 인사관리담당부서장, 그 밖에 위원장이 정하는 윤리경영과 청렴시책 관련업무 담당부서장 등 10명 이하 2. 외부자문위원 : 사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서 4명 이하	① <u>청렴경영 및 윤리경영</u>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<u>청렴실천특별위원회</u>(이하 이 장에서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② ----- ----- 24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그 위원은 아래 각 호와 같다. 1. 내부위원 : 부사장, 본부장, 윤리경영담당부서장, 감사담당부서장, <u>그 밖에 위원장이 정하는 윤리경영과 청렴시책 관련업무 본사 담당부서장 등 20명 이하</u> 2. 외부자문위원 : 사장이 위촉하는 사람 또는 『<u>청렴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</u>』 제2조 제1호의 <u>청렴옴부즈만</u>으로서 4명 이하

현 행	개 정(안)
제10조(윤리실천사무국과 반부패실무추진반)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윤리실천사무국(이하 이 장에서는 “사무국”이라 한다)과 반부패실무추진반(이하 이 장에서는 “추진반”이라 한다)을 둔다.	제10조(<u>청렴</u>실천사무국과 반부패실무추진반)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<u>청렴</u>실천사무국(이하 이 장에서는 “사무국”이라 한다)과 반부패실무추진반(이하 이 장에서는 “추진반”이라 한다)을 둔다.